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고,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3호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8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10장의4의 제목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9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는”을 “국립문화재연구원은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각각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국립문화재연구소”를 각각 “국립문화재연구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34”를 “2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87”을 “188”로 하며,

3급 또는 4급 이하 “180”을 “18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속기관) ① (생 략)	제2조(소속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<u>국립문화재연구소</u> 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립문화재연구소</u> ----- -----.
제7조(문화재정책국) ① (생 략)	제7조(문화재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.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21. · 22. 삭 제	
23. 한국전통문화대학교 · 국립무형유산원 · <u>국립문화재연구소</u> ·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 · 감독	23. ----- ----- <u>국립문화재연구소</u> ----- -----
제13조(하부조직)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	제13조(하부조직) ----- ----- ----- -----

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
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
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(국립
문화재연구소, 국립해양문화재
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
한다)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
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
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
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
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
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
기관(국립문화재연구소, 국립해
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
부는 제외한다)에 두는 정원의
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
로 정한다.

제20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
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
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
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
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
문화재청의 소속기관(국립문화
재연구소, 국립해양문화재연구
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
다)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

-----국립
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제17조(하부조직) -----

-----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제20조(하부조직) -----

-----국립문화
재연구원-----

_____.

제26조(하부조직) -----

국립문화
재연구원-----

-----.

제33조의8(하부조직) -----

국립문화재연구
원-----

-----.

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원

제33조의9(직무) 국립문화재연구
원은 -----

를 관장한다.

제33조의10(하부조직의 설치 등)

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②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·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③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문화재청의 소속기관(국립문화재연구소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

-----.

제33조의10(하부조직의 설치 등)

① 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③ 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--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의 소속기관(국립문화재연구소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별·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8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.

-----.

-----.

② -----국립문화재연구원-----

-----.

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234</u>	<u>23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87</u>	<u>188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80</u>	<u>18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4